

인도주의의 상징

1859년 이탈리아 북부를 여행하던 스위스 실업가 양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제네바로 돌아 가자마자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기술한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을 짜필했으며, 여기서 그는 전쟁 희생자에 대한 원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평시에 모든 국가 내에 전쟁 희생자를 지원할 준비가 된 자원봉사자 단체를 설립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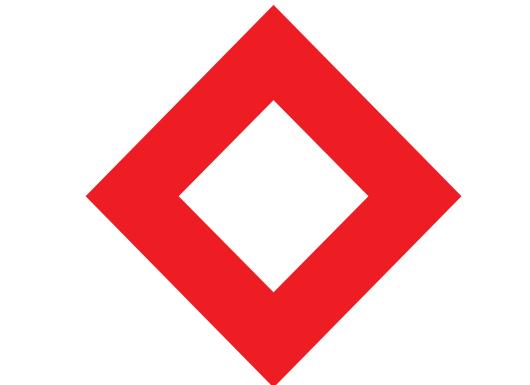
둘째, 전쟁터의 구호 요원과 부상자를 보호하려는 제안에 대해 국가들의 동의를 구할 것

첫번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국제 적십자적신월운동 내에 185개 회원사가 있다. 두번째 제안은 제네바협약 제정의 첫 국제회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제네바4개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군 의무기관, 자원봉사 구호요원 및 무력충돌 희생자의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그들을 전투원과 구별하기 쉽게 하는 통일된 표지를 채택하는 것이 1863년 2월 17일 뒤낭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5인위원회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 위원회는 나중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되었다. 표지 – 그후에는 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 는 단순해야 하고,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아군과 적군에게 공통된 것이어야 한다.

1864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회의는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반대로 뒤집은 흰 바탕에 붉은 십자(白地赤十字)를 채택했다. 하지만 1876~8년 러시아와 터키간의 전쟁에서 터키는 적군이 사용하는 적십자를 존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적십자 대신에 적신월(赤新月, Red Crescent)을 표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페르시아(이란) 역시 다른 표지, 즉 적사자태양(赤獅子太陽, Red Lion and Sun)을 선택했고 두 표장은 1929년 외교회의에서 승인되었다. 1980년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적사자태양을 적신월로 교체했다.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은 국제법상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문화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것이 무력충돌의 희생자, 군 의무기관, 그리고 인도적 구호 요원들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의미를 위태롭게 한다.



추가 표장

2005년 12월 8일, 1949년 제네바협약 체약국들은 외교회의에서 추가 표장을 제정하는 제Ⅲ추가의정서를 채택했다.

제Ⅲ추가의정서의 새로운 표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아무런 종교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함의가 없다.
- 적십자 및 적신월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향유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혹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적십자 및 적신월 표장 처럼) 군 의무기관은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표장을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외적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시적신월사연맹(연맹,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의정서는 개별 국가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가 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더 넓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여타의 승인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각국의 해당 단체가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수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대체하지 않는다.
- 표장의 선택권을 넓힌다.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보편성 확보에 기여한다.
-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강화한다.
- 표장의 사용에 있어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 표장의 확산에 중지부를 찍는다.

표장의 사용

표장은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호표장

무력충돌에 있어서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에 의해 구호요원과 의료요원 및 시설, 운송 수단들에게 부여된 보호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런 경우에 표장의 크기는 가능한 큰 규격이어야 하며 어떠한 다른 정보와도 함께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표시표장

요원 또는 물자와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런 경우에 표장은 추가 정보(예, 각국 적십자사의 이름)를 표시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격이어야 한다. 표시적 장치로 사용될 때, 표장의 크기는 작아야 하며, 보호적 장치로 사용되는 표장들과의 어떠한 혼돈도 피하기 위하여 완장이나 건물 지붕에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적 사용

이 표장 사용의 권리 있는 누구에게 있는가?

무력충돌 시

- 군대의 의무기관 및 군종요원
- 군 의료서비스 지휘 체계 하에 있으면서 군사 법규를 따라야 하는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의무요원, 의무대 및 수송대
- (명확한 정부의 승인과 그 통제하에) 민간 병원 및 모든 의무대, 기타 독자적 구호단체와 의료시설 및 그것들의 직원 그리고 부상자, 병자, 난민자와 치료와 수송을 맡은 민간 의료 운송수단

평시

- 군대의 의무기관 및 군종요원
- 당국의 허가를 얻어 무력충돌 시에 사용되는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의료 시설 및 운송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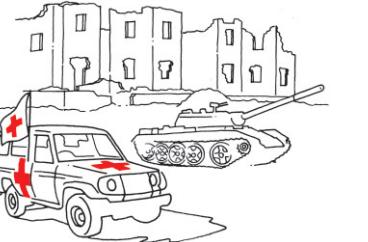
ICRC와 연맹은 언제나(평시와 무력충돌 시) 표장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3가지 표장은 모두 보호적 표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Ⅲ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한 국가의 군대 의무기관과 군종요원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기준에 사용하고 있는 표장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는 한, 공인된 어떤 표장이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CRC, 연맹 그리고 그 기구들이 정식으로 허가하는 요원들은 현행 명칭과 표장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예외적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표장의 오용

표장의 오용은 어떠한 것인가?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인도적 원칙의 유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표지적 사용

이 표장을 사용할 권리 있는 누구에게 있는가?

무력충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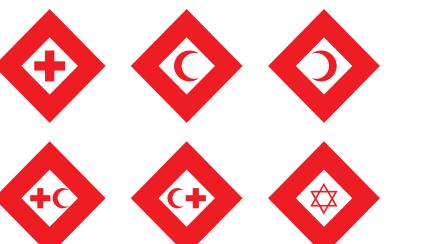
-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 연맹
- ICRC

평시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성원(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ICRC, 연맹)과 관련된 조직 요원, 물자
- 표장이 국내법에 맞게 사용되고 각국의 해당단체가 그러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에 예외적 조치로서 부상자와 병자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할 임무가 부여된 앰뷸런스와 응급처치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적수정을 자신의 표장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각국의 단체는 적수정 도형 안에 승인된 표장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합친 표장을 넣을 수 있다. 그들은 적수정 도형 안에 다른 식별표지, 즉 기존에 이미 실효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제III 추가의정서의 채택에 앞서 제네바 제협약 체약국 및 ICRC에 통보되었던 식별표지를 넣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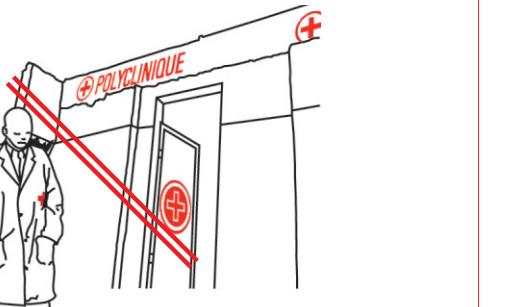
모방

형태 그리고(또는) 색상 때문에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지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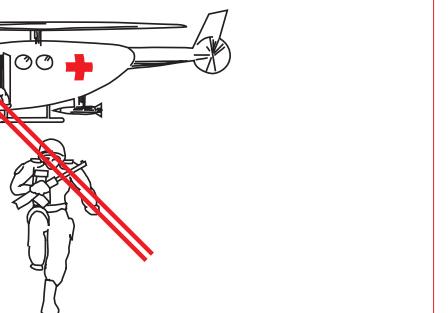
부적절한 사용

국제인도법의 관련 조항에 어긋나게 식별 표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 그리고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단체 또는 요원들(기업, 약사, 개인병원 의사, NGO, 일반인 등)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배신행위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를 수행할 때 전투원 또는 군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배신적 사용이 사람의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을 경우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표장의 보편적 존중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제네바 제협약의 개별 체약국은 표장의 사용을 규제하고 무력충돌 시와 평시에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장 오용의 방지와 억지는 단지 규제적 또는 형사적 수단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각 국가의 당국은 자국 국민, 기업체, 의료업계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장사용에 관해 주지시켜야 한다.

각국의 해당 단체들도 역시 표장의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CRC는 분쟁 발생 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보급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창설 모체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 Switzerland
T +41 22 734 6001 F +41 22 733 2057
E-mail: shop.gva@icrc.org
www.icrc.org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7, Chemin des Crêts, Petit-Saconnex
P.O.Box 372, 1211 Geneva 19, Switzerland
T +41 22 730 4222 F +41 22 733 0395
E-mail: secretariat@ifrc.org www.ifrc.org

번역·발행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THE KOREAN RED CROSS HUMANITARIAN LAW INSTITUTE
TEL : 02)3705-3797 FAX : 02)3705-3794 E-mail : krcihl@redcross.or.kr



+C♦ EMBLEMS OF HUMANIT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THE KOREAN RED CROSS HUMANITARIAN LAW INSTITUTE